

업 무 협 약 서

교육부, 카카오임팩트, 한국대학교육협의회(이하 '협약기관' 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의 AI 역량 함양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,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협약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교육부

가. 민관 협력 교육 모델의 대학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

2. 카카오임팩트

가. AI 활용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지원 및 교육 콘텐츠 제공

나. 멘토링, 특강 등 대학생의 AI실무역량 강화 지원

다. 대학 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지원

3. 한국대학교육협의회

가. 사업의 운영 총괄 및 대학 현장 실행 지원

4. 기타 각 협약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비용 부담 및 집행)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기관 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) 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.

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기관이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 서면에 의한 종료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5조(협의조정) 본 협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,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①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공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관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은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.

제7조(법적구속력) 본 협약은 각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 협약기관은 협약의 목적이 소멸되거나 협력 여건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약의 준수)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,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4월 28일



교육부

교육부

차관

최은옥

최은옥

kakao!impact

카카오임팩트

이사장

류석영

柳



한국대학교육협의회

회장

이기정

李基鼎